

유명인의 사생활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충돌 ①

캐롤라인(Caroline von Monaco III) 판결(BVerfGE 120, 180 ff.)의 사실관계 및 당사자들의 주장

권용덕 독일 쾰른대 법학 박사과정

I. 들어가며

최근 연예인들의 열애 소식 등을 둘러싸고 언론이 유명인의 사적인 일상생활을 보도할 수 있는 언론자유가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인 독일 캐롤라인 판결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수행하는 필수적 역할과 법원 판결의 흐름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의 캐롤라인 판결에서는 세 당사자(캐롤라인 공주, 언론사 'E GmbH & Co. KG'의 대표이사 및 언론사 'K GmbH & Cie'의 대표이사)의 각기 다른 헌법소원에 대해 판단하였다. 민사법원은 사실관계로부터 양 당사자의 보호 이익을 크게 개인의 이익¹⁾과 대중의 정보 이익²⁾으로 나누어 판단하였으며, 해당 법원이 두 법익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1) 유럽인권협약(Europäische Menschenrechtskonvention, EMRK) 제8조 제1항 및 독일 기본법(Grundgesetz) 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생활의 보호 및 인격권에 근거한 개인의 이익
2)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제1항 및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언론 및 정보의 자유에 근거한 대중의 정보 이익

즉, 보도된 사진이 현대사 영역의 사진(「미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1호³⁾)인지, 보도의 내용이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도가 대중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지가 위의 기준에 해당한다. 이번 글에서는 언론사가 캐롤라인 공주와 남편의 사적인 활동이 찍힌 사진을 잡지에 게재한 데 대해 캐롤라인 공주가 두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 일련의 과정⁴⁾을 살펴본다.⁵⁾

II. 언론사 'E'에 대한 캐롤라인 공주의 제소

1. 사실관계

캐롤라인 공주(Caroline Louise Marguerite Grimaldi)는 모나코의 고(故) 라이니어 국왕(Fürsten Rainier von Monaco)의 딸이며, 독일 하노버 왕가(王家)의 에른스트 아우구스트 왕자(Prinz Ernst August von Hannover)와 결혼하였다. 그녀는 본인과 남편의 공식 행사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 및 일상 생활에 대한 사진 보도를 중심으로 최초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주요 보도 내용

언론사 'E'는 주간지 <거울 속의 여인>(Frau im Spiegel)을 발행한다. 이 잡지는 2002년 2월 20일자 02/9호에서 '레이니어 국왕-집에 혼자 있지 않다'라는 제목 하에 '캐롤라인 공주의 아버지이자 모나코의 국왕이 병에 걸려 몇 주 동안 공개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보도했다. "이 나라에는 큰 우려가 있다. 자녀들-알버트 왕자는 현재 솔트 레이크 시티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출전 중, 캐롤라인 공주는 하노버의 에른스트 아우구스트 왕자와 휴가 중, 그리고 스테파니 공주-은 번갈아 가며 그들의 아버지를 돌보고 있다. 그는 몸이 좋지 않아 혼자 있어서는 안 되고, 자녀들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이 보도에는 캐롤라인 공주가 스위스 겨울 스포츠 휴양지인 생모리츠(St. Moritz)의 한 거리에서 남편과 함께 있는 사진이 게재되어 있었다.

이 잡지는 2003년 2월 20일자 03/9호에서 '생모리츠 왕실의 겨울 눈 즐기기'라는 제목으로 캐롤라인 공주 및 다른 유럽 귀족 가문의 유명 인사들이 생모리츠에 있는 리조트에 머물렀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도 캐롤라인 공주와 그녀의 남편이 그곳의 거리에서 찍힌 사진이 침

3)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unst und der Photographie

4) Vgl. BVerfGE 120, 180, 182-195. 이 글의 II. 및 III. 참고; BVerfGE 120, 180 ff. URL: <https://www.servat.unibe.ch/dfr/bv120180.html#Opinion> (최종방문: 2024. 2. 28).

5) 이번 글에서는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당사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다음 글에서 이와 관련된 사생활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법익 균형을 위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주요 기준에 대해 분석한다.

부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진 아래에는 캐롤라인 공주와 남편이 ‘태양과 눈’을 즐기고 있다고 설명되어 있었다. 2004년 3월 11일자 12/04호에서는 ‘캐롤라인 공주-모나코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기다린다’라는 제목으로 한동안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캐롤라인 공주가 모나코에서 열린 로젠발(Rosenball) 파티 행사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는 캐롤라인 공주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캐롤라인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그녀가 남편과 함께 체어리프트(Chairlift)에 탑승한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사진에는 “체어리프트에서의 아늑한 대화”라는 설명이 달렸다. 이 기사는 사진이 촬영된 취르스(Zürs)에서 캐롤라인 공주가 남편과 함께 머무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그녀는 남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생모리츠에 머무르는 중이었다. 이에 캐롤라인 공주는 해당 언론사 ‘E’를 상대로 앞선 사진 보도에 대한 금지명령을 청구했다.

2. 지방법원, 캐롤라인 공주의 손을 들어준다

함부르크 지방법원 (Landgericht Hamburg)은 해당 언론사에게 문제의 사진을 다시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했다. 정보에 대한 대중의 이익과 보도에 반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은 캐롤라인 공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2004년 6월 24일 유럽인권재판소(Europäischer Gerichtshof für Menschenrechte, EGMR) 판결에서, 일반연방법에 준하는 「유럽인권협약」(Europäische Menschenrechtskonvention, EMRK)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캐롤라인 공주)는 원칙적으로 대중의 호기심과 오락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신의 사생활이 묘사된 사진의 유포에 대하여 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당 조항을 해석한 바 있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 제2원은 2004년 10월 14일 판결⁶⁾에서 관련 법률 조항에 해석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고 헌법적 요건과 충돌하지 않는 한, 전문법원에 차등적인 판례주의에 의해 형성된 독일 하위 법률 체계에 법원의 관련 판례를 통합하는 임무를 부여한 바 있다.

지방법원 판결

함부르크 지방법원의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원의 판례는 독일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Grundgesetz) 제2조 제1항과 함께 제1조 제1항 및 미술저작권법 제23조 제

6) BVerfGE 111, 307.

7) 여기에서는 판결의 주요 내용을 원문 그대로 소개하며 관련 분석은 다음 글에서 다룬다.

2항과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항에 비추어볼 때, 불확정적 법적 개념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 인격권 규정을 구조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가 1999년 12월 15일 판결⁸⁾에서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 보호를 좁게 해석한 것은 사실이나 연방헌법재판소가 이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헌법적 요건에 대한 입장을 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법상 불법행위의 구성요소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의 한계를 개별 사건에서 판단하는 것은 전문법원의 몫이다. 캐롤라인 공주는 「미술저작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자신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 「기본법」 제5조 제1항 및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는 캐롤라인 공주의 이러한 이익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는 언론이 모든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민주 사회에서 필수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진의 유포도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캐롤라인 공주의 아버지의 병환과 모나코에서 열리는 행사 참석에 대한 보도는 넓은 의미에서 동시대적 사건에 해당한다. 캐롤라인 공주가 아버지의 병환 중에 휴가를 떠났다는 보도는 공적 생활에 전혀 중요하지 않은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도는 「미술저작권법」 제23조 제2항⁹⁾에 따라 캐롤라인 공주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정당하고 최우선적인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길거리를 걷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 중에 유명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촬영하는 것 역시 근본적으로 중대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해당 보도에서는 이 인격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공공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캐롤라인 공주의 남편은 어떠한 정치적 기능도 수행하지 않았으며, 그녀는 모나코 국왕의 딸이라는 신분을 통해 세계 정치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은 국가수반과 연관되었을 뿐이다. 만약 라이니어 국왕의 병환이 캐롤라인 공주의 시각적 묘사를 유포하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한다면, 이는 사진 기자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부터 유명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해당 언론사의 보도 가능성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언론사는 이 사건 보도로 인해 독자들의 단순한 호기심 충족을 넘어서는 어떤 이익이 충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캐롤라인 공주가 모나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첨부된 사진(남편과 함께 체어리프트를 타고 있는 모습)을 게시한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녀가 해당 행

8) BVerfGE 101, 361.

9) 「미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2조에 따른 동의 없이 이하에 해당하는 것을 배포하거나 게재할 수 있다. 1. 현대사 영역의 사진, 제2항: 단, 이 권한(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배포하거나 게재할 수 있는 권한)은 묘사된 사람 또는, 이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친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배포 또는 게재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3 Abs. 2 KUG: (1) Ohne die nach § 22 erforderliche Einwilligung dürfen verbreitet und zur Schau gestellt werden: 1. Bildnisse aus dem Bereiche der Zeitgeschichte; (2) Die Befugnis erstreckt sich jedoch nicht auf eine Verbreitung und Schaustellung, durch die ein berechtigtes Interesse des Abgebildeten oder, falls dieser verstorben ist, seiner Angehörigen verletzt wird).

사에 참석한 것이 현대사의 한 사건일 수는 있으나, 첨부된 사진은 해당 보도의 주제와 동떨어진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3. 고등지방법원, 언론사의 손을 들어주다

언론사 ‘E’는 이러한 지방법원의 결정에 항소하였다. 이에 함부르크 고등지방법원(Oberlandesgericht Hamburg)은 지방법원의 결정을 뒤집어 캐롤라인 공주의 보도금지명령 요청을 기각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사생활 보호는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기본권 보호에 우선하지 않는다. 연방헌법재판소법(Gesetz über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BVerfGG¹⁰⁾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고등지방법원은 1999년 12월 15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원 판결의 기본적 고려사항을 우선 고려했다.¹¹⁾

4. 연방대법원, ‘캐롤라인 공주 일부 승소’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 상고심 판결에서 캐롤라인 공주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¹²⁾, 아버지의 병환에 대한 보도에 첨부된 사진의 게재에 대한 캐롤라인 공주의 소송을 기각한 고등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첨부된 사진 중 나머지 두 장의 사진에 대해 고등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해당 언론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지방법원이 내린 보도 금지 조치를 원상 회복시켰다.

연방대법원 판결

연방대법원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³⁾

「미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언급된 현대사 영역에 대한 사진의 게재 여부는 또한 캐롤라인 공주와 같이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의 사진이 특정 지역 외에서 유포되는 경우,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항 및 「기본법」 제2조 제1항과 함께 제1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의 이

10)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1조 제1항: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연방정부와 연방주의 헌법기관은 물론 모든 법원 및 당국에 구속력을 갖는다(§ 31 Abs. 1: Die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binden die Verfassungsorgane des Bundes und der Länder sowie alle Gerichte und Behörden).

11) Vgl. BVerfGE 101, 361.

12) Vgl. BGHZ 171, 275.

13) 여기에서는 판결의 주요 내용을 원문 그대로 소개하며 관련 분석은 다음 글에서 다룬다.

익과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제1항 및 기본법 제5조가 보장하는 대중의 정보 이익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언론이 저널리즘 기준에 따라 무엇이 공공의 관심사인지를 법적 한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활동의 여지를 남기려면 현대사의 개념은 일반적인 사회적 관심사를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대중의 관심사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 대중의 관심사에는 재미있는 기사도 포함되고, 여론 형성도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언론은 이 경우에도 관련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보도의 정보 가치는 법익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대중을 위한 정보 가치가 클수록 관련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 이익은 정보 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 반대로 일반 대중에 대한 정보 가치가 낮을수록 당사자의 인격권 보호가 더 중요해진다. 독자의 관심이 일반적인 오락에 있다면, 일반 대중에 대한 정보 가치는 일반적으로 사생활 보호보다 비중이 낮으며 보호할 가치가 없다. 이러한 원칙은 유명인에 대해 보도할 때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보도가 단순한 호기심 충족을 넘어 사실에 입각한 내용으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보도 당사자의 인지도가 정보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언론의 여론 형성 기능을 위해서는 무엇이 정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에 따른 법익의 균형은 「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본권 보호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에서 도출된 요건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항소법원의 의견과는 달리, 1999년 12월 15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원 판결¹⁴⁾이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각 기관들에 미치는 구속력에 의해 법익의 균형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연방헌법재판소가 1995년 12월 19일 판결¹⁵⁾에서 연방대법원이 원치 않는 녹취에 대한 사생활 보호를 인정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명백히 인식 가능한 공간적 격리(Abgeschiedenheit)를 무시한 경우에만 사생활 보호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비교하여 법익의 균형을 따질 때 대중을 위한 정보 가치의 부족을 더 크게 고려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정보 가치를 판단할 때, 보도에 수반된 사진에 대한 설명이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해당 언론사는 생모리츠에 다수의 유명인들이 참석했다고 보도하면서 캐롤라인 공주의 겨울 휴가 중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도 게재했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충분한 정보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 유명인이라고 해도 휴가는 근본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사생활의 핵심 영역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인격권, 사생활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할 때, 「미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1호¹⁶⁾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 캐롤라인 공주는 사진의

14) Vgl. BVerfGE 101, 361.

15) Vgl. BGHZ 131, 332.

16) 앞의 각주 5) 참고.

유포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그로 인한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 해당 조항에 따른 정당한 이익의 침해 가능성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휴일에 남편과 함께 스키복을 입고 체어리프트를 타는 모습이 담긴 다른 사진에 대해서도 법익의 균형을 판단함에 있어 캐롤라인 공주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었다. 다가오는 로젠발 파티 행사에 대한 보도가 일반적인 관심사, 즉 현대사의 사건을 다루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의 사진이 사용된 보도에서 일반적인 관심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보도의 내용은 캐롤라인 공주가 현재 취르스(Zürs)에 머물고 있으나 남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생모리츠로 여행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고, 따라서 이는 부부의 사적인 영역에 관한 것이며 오로지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다.

해당 언론사가 캐롤라인 공주의 부친의 병환에 대한 추가 보도에서, 그녀가 남편과 함께 생모리츠의 한 거리에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 사진은 그녀가 유명인이라 해도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사생활의 핵심 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당시 모나코 국왕의 병환 중 가족들의 행동을 다룬 보도가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면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 역사적 사건은 적절하게 기술되었고 사진으로 기록되었다. 해당 보도에서 편집된 기사가 우수한지 여부는 법익의 균형을 평가함에 있어 중요하지 않다. 캐롤라인 공주의 사진에서 독립적인 법익 침해의 효과를 도출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촬영이 비밀을 악용한 것이거나 특별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점도 명백하지 않다.

5. 언론사와 캐롤라인 공주의 헌법소원 제기

1) 함부르크 지방법원 및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언론사의 헌법소원(1BvR 1602/07)

언론사는 함부르크 지방법원과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캐롤라인 공주의 사진 배포가 금지된 것에 대해 다시 이익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유명인의 사생활 및 일상 생활에 대한 흥미 위주의 보도가 언론의 자유의 보호 대상임을 문언상으로는 인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건에서 정보에 대한 언론의 이익이 촬영된 인물의 이익을 어떻게 넘어서 수 있는지 분명치 않다. 이는 1999년 12월 15일의 연방헌법재판소 판결¹⁷⁾에서 강조한 유명인의 본보기 및 대조 기능뿐만 아니라 특정 인물을 표현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 언론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1999년 12월 15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원 판

17) Vgl. BVerfGE 101, 361.



결의 기본적 고려사항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무시한 것이다. 이 판결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개인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 있는 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적 영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판단 기준으로 강조한 언론을 위한 정보 이익은 촬영된 인물의 사생활이 전혀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만 보호될 수 있다.

2) 함부르크 고등지방법원과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캐롤라인 공주의 헌법소원(1 BvR 1626/07)

캐롤라인 공주는 아버지의 병환에 대한 보도에 휴가 사진의 게재를 허용한 고등지방법원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기본법 제2조 제1항과 함께 제1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된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004년 10월 14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원 판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문법원은 법을 적용할 때 유럽인권재판소의 관련 판례에 따라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항이 보장하는 사생활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04년 6월 24일 판결에서 이익 형량의 판단 기준으로 보도의 정보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연방대법원은 캐롤라인 공주의 사생활과 일상 생활이 담긴 사진의 유포가 아버지의 병환을 보도하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이익 형량을 판단하는 기준은 제한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해당 보도는 아버지의 병환이 국가 원

수로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캐롤라인 공주가 아버지를 간병하는 몇 달 동안 형제들과 번갈아 가며 휴가를 다녀온 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다. 연방대법원 판례에 명시된 충분한 정보 가치의 존재에 대한 사소한 요건으로 인해,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에서 요구하는 캐롤라인 공주의 사생활 보호, 특히 사진 기자들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스토킹으로부터의 보호는 보장되지 못했다. 또한, 연방대법원이 허용한 사진의 내용을 통해 캐롤라인 공주가 사진에 찍히는 순간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지 않다고 믿었고, 따라서 망원렌즈를 사용하는 등의 스파이 행위를 통해 사진을 입수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III. 언론사 'K'에 대한 캐롤라인 공주의 제소

1. 사실관계

언론사 'K'는 주간지 <7일>(7 Tage)을 발행한다. 2002년 3월 20일자 13/02호에서 “캐롤라인 공주의 침대에서 자는 것-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다! 캐롤라인 공주와 에른스트 아우구스트가 꿈에 그리던 별장을 임대하다”라는 제목 하에 캐롤라인 공주의 남편이 케냐에 별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부가 부재중일 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별장을 임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 헤드라인에는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도 검소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별장을 유료로 게스트에게 빌려줍니다”라는 부제가 강조되었다.

이 보도의 본문에는 캐롤라인 공주 외에도 할리우드 스타, 귀족 가문의 일원 등 몇몇 개인이 실명으로 언급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해당 보도에서 이들은 “경제적인 사고방식이 발달”하였고,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성(城)이나 집을 임대한다고 언급되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하루 1,000 달러에 휴가용 별장을 빌릴 수 있다. 이 보도는 휴가용 별장의 가구와 임대 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었고, 임대료에 직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이 보도에는 “휴가 기분으로 남편과 함께한 캐롤라인”이라는 제목 아래 휴가용 별장과 그 주변을 찍은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캐롤라인 공주가 남편 옆에서 휴가를 보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게재되었다.

2. 지방법원, '캐롤라인 공주의 승소'

2005년 6월 24일의 판결에 따라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이 사진의 재게재를 금지했다. 지방법원의 법적 고려 사항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1 BvR 1602/07 및 1 BvR 1626/07에 이미 명시된,

앞선 함부르크 지방법원의 판결과 일치한다. 지방법원은 여기서 문제된 사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즉, 캐롤라인 공주의 남편이 휴가용 별장의 집주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현대사적 사건으로 볼 수 있으나,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사생활 보호와 언론 및 정보의 자유를 비교할 때, 해당 사진의 공개가 일반적인 관심사에 대한 논쟁에 기여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캐롤라인 공주의 남편이 케냐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부유한 휴가객들에게 임대했다는 사실은 크게 중요치 않고, 캐롤라인 공주는 세계 정치적으로 중요성이 크지 않은 국가의 원수와 밀접한 관계에 있을 뿐이며, 그녀의 남편 역시 어떤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언론사의 대표이사는 정보 내용이 사적인 활동을 하는 유명인의 묘사로 국한된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독자들의 단순한 관음증적 욕구 충족을 넘어서는 정보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3. 고등지방법원, ‘언론사 대표이사의 승소’

해당 언론사의 항소에 대해 함부르크 고등지방법원은 2006년 1월 31일 판결¹⁸⁾을 통해 지방법원의 결정을 뒤집어 캐롤라인 공주의 해당 사진의 보도금지명령 요청을 기각했다. 이 판결의 근거는 헌법소원절차(1 BvR 1626/07)에서 캐롤라인 공주가 제기한 동일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4. 연방대법원, ‘캐롤라인 공주의 사진 게재 금지를 확정’

연방대법원은 2007년 3월 6일 판결(VI ZR 52/06)¹⁹⁾에서 항소심 판결을 뒤집어 해당 언론사의 항고를 기각하여 지방법원(1심)의 보도 금지 결정을 확정했다. 연방대법원은 같은 날 헌법소원 절차(1 BvR 1602/07 및 1 BvR 1626/07)에서 이의가 제기된 상고심 판결(VI ZR 51/06)에 이미 명시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상고심 판결에서 제시된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언론사가 주장하는 정보 이익은 캐롤라인 공주의 사생활 보호 이익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해당 별장과 임대에 대한 보도는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건에 관한 것도 아니다. 또한 논란이 된 사진이 일반적인 관심사에 대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거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18) Oberlandesgericht Hamburg Urt. v. 31.01.2006, 7 U 82/05, in: AfP 2006, 180 ff. Abrufbar in: <https://www.schweizer.eu/aktuelles/urteile/8944-olg-hamburg-berufungsurteil-vom-31-januar-2006-7-u-82-05> (4.3.2024).

19) Vgl. EuGRZ 2007, 503 ff.

5. 언론사의 헌법소원(1 BvR 1606/07) 제기

언론사 'K'는 함부르크 지방법원의 결정과 연방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캐롤라인 공주의 모습이 포함된 흥미 위주의 언론 보도에 첨부된 사진은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기본권의 보호 대상이다. 무엇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전적으로 언론의 기준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법원은 이익 형량의 과정에서 보도의 정보 가치에 대한 평가를 언론사의 자체 평가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보장하는 여론 형성은 폭넓게 이해되어야 하며, 정치 생활의 영역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 영역 밖의 유명인에 대한 보도도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독자들이 해당 인물에 대한 개인적인 삶의 태도를 지향할 수 있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사진 보도의 정보 가치를 첨부된 문자 보도의 내용과 비교하여 판단해서는 안 된다. 법원의 견해에 따라 첨부된 문자 보도가 충분한 정보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개인의 사진 유포를 허용할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이 해당 출판물의 정보 가치를 확인한 경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

캐롤라인 공주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해당 기본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주거지를 벗어난 곳의 공간적 사생활 보호는 지역적 단절의 조건으로 제한되고, 캐롤라인 공주의 모습에는 의심의 여지없이 이 조건이 결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판결들이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제1항이 보장하는 정보의 자유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이 기본권의 보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은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을 위반한 것이다. 「유럽인권협약」은 일반 연방법으로서 「기본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국내 법원의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서 기본권이 정한 틀 안에서 법원이 해석해야 한다.

IV. 나오며

캐롤라인 공주는 자신의 사생활의 모습이 담긴 사진(생모리츠에서 휴가 중 찍힌 사진)이 보도됨에 따라 「기본법」 제2조 제1항과 함께 제1조 제1항에 따른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언론사 'E'에 해당 사진의 보도 금지를 요구하였다. 또, 언론사 'K'가 캐롤라인 공주의 남편이 케냐에 소유한 별장을 임대한다는 사실을, 그녀가 남편과 함께 해당 별장에 머무르며 휴가를 보내는 사진과 함께 보도한 데 대해 해당 사진에 대한 보도금지를 요구하였다.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은 유명인으로서 캐롤라인 공주의 개인적 이익, 즉 사생활 및 인

격권의 보호와 대중의 정보 이익, 즉 언론 및 정보의 자유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있다. 이에 민사법원은 해당 보호 법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해 세 가지 기준(현대사 영역의 사진, 공공의 관심사, 여론 형성에 기여)을 제시하였다. 문제가 된 보도가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해당 보도는 정보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정보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언론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보호 이익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법익 균형을 위해 법원이 제시한 세 가지 기준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보도된 유명인의 사진이 현대사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누가 판단할 수 있을지, 해당 사진과 함께 게재된 보도가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또는 이와 같은 보도가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언론사가, 아니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언론사는 일차적으로 오락성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보도가 오락적 내용이라는 이유로 정보 이익을 부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